

# 학회소식

## 1. 정례학술발표회

1) 한국법사학회 제119회 정례학술발표회 및 제9회 영산 법사학 학술상 시상식

주관: 한국법사학회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일시: 2016년 12월 16일(금) 오후 12시 30분~18시

장소: 서강대학교 X(하비에르)관 227호

###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12:30~12:50)

개회사: 한상돈(한국법사학회 회장, 아주대 법전원 교수)

축사: 김상수(서강대 법학연구소 소장, 서강대 법전원 교수)

<제1부> 메이지민법과 관습(13:00~14:00)

사회: 문준영(부산대 법전원 교수)

제1주제: 메이지민법 제정과정에서의 관습의 취급(明治民法制定過程における慣習の扱い)

발표: 岡孝(오까 다카시) 日本 学習院大学 교수

통역: 김상수(서강대 법학연구소 소장, 서강대 법전원 교수)

<제2부> 대한제국기 민사판결 연구(14:20~16:40)

사회: 조지만(아주대 법전원 교수)

제2주제: 대한제국기 민사판결에서 법문 인용의 맥락(14:20~15:30)

발표: 문준영(부산대 법전원 교수)

**제3주제:** 한말 신용거래 양상에 대한 법적 분석(15:40~16:40)

발표: 김백경(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3부> 영산학술상 시상식(17:00~18:00)

2) 제120회 정례학술발표회

주관: 한국법사학회

일시: 2017년 4월 22일(토) 13시 30분~18시 30분

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13:30~13:40)

개회사: 한상돈(한국법사학회 회장, 아주대 법전원 교수)

사 회: 조지만(총무이사, 아주대)

**대 주 제:** 대한제국의 주권 및 영토승계

사회: 전종익(서울대)

**제1주제:** 로마법상 *uti possidetis* 법리의 근대 국제법에서의 원용: 1801년 스페

인-포르투갈 간 브라질영토분쟁의 개관(13:40~14:20)

발표: 홍기원(서울대)

**제2주제:** 한국의 국가적 계속성(14:20~15:00)

발표: 도경옥(통일연구원)

**제3주제:** 상해임시정부의 대한제국 승계에 관한 대내외 인식(15:00~15:40)

발표: 김영석(아주대 법학연구소)

----- 휴 식 (15:40~16:00) -----

사 회: 서울오(이화여대)

**제4주제:** 일제강점기 공화제의 도입과 정착(16:00~16:40)

발표: 전종익(서울대)

제5주제: 1948년 헌법 영토조항의 도입과 정착(16:40~17:20)

발표: 정상우(인하대)

제6주제: 1948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의미(17:20~18:00)

발표: 김수용(대구대)

종합토론 (18:00~18:30)

사회: 서울오(연구이사, 이화여대)

## 2. 제9회 한국법사학회 瀛山 法史學 學術賞 시상식

2016년 12월 16일(금) 오후 5시에는 제9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이 거행되었다. 이 상은 2008년 朴秉濠 명예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께서 후학을 격려하고 학회의 발전과 법사학의 진흥과 이를 통한 법문화 창달을 위해 출연한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법사학회가 주관이 되어 2008년 10월 25일에 영산 法史學 學術賞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한국법사학회 회원과 한국고문서학회 회원 가운데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으로 나누어 수여하고, 우수학술상은 격년으로, 신진학술상은 40세 이하의 학자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2008년에 제1회 우수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각 1명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을, 2010년에는 우수학술상 2명(공동)과 신진학술상 1명을, 2011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 2012년에는 우수학술상, 신진학술상 각 1명, 2013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 2014년에는 우수학술상, 신진학술상 각 1명, 2015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을 시상하였다. 이번 제9회 한국법사학회 영산 법사학 학술상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는 법사학분야와 고문서학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추천받았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수상자, 수상논문, 선

정 이유 및 수상소감은 다음과 같다.

1) 우수학술상(제18호)

수 상 자: 李康旭(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

수상논문: 「臺諫 啓辭에 대한 考察」(고문서연구 제45권[2014. 8])

선정이유:

이 논문은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啓辭에 관하여 직성 및 전달 체계, 그 종류에 따른 분류, 기타 관련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고문서 연구의 본령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증적으로 잘 수행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법사학의 관점에서 조국의 위정 체제에 대한 대간의 역할과 기능 및 국왕의 국정 통할 방식의 한 중요한 국면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 공이 크다. 이를 기초로 향후 관련 사료들을 더 탐구하면 조선시대 국정 운영을 해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장 이강욱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상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고, 이제는 나이도 적지 않고 해서 상을 받을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더구나 이처럼 권위 있는 귀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 상을 주신 靈山 선생님과 한국법사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1997년과 2000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靈山 선생님께 고문서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의 雅號를 딴 학술상을 받게 되어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문을 공부한 지는 이제 30년이 되었고, 그중 약 20년은 조선시대의 사료와 법전을 번역하고 강의하는 일에 전념해왔습니다. 저처럼 현장에서 사료와 법전의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사료와 법전을 전공하신 분들의 연구 성과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연구가 되어있지 않

은 부분이나 연구가 되어 있어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특히 제도와 역사어휘에 있어서 고충이 큼니다. 그러다보니 사료의 번역이나 정보화사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서로 모여서 법전을 공부하기도 하고 역사어휘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시대의 제도와 역사어휘를 익혔습니다. 저로서는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위원으로서 『일성록』과 『전율통보』를 번역한 경험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조선시대의 사료와 법전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상을 받게 해준 ‘臺諫 啓辭에 대한 考察’이라는 논문도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쓴 논문입니다. 『승정원일기』에는 거의 매일 臺諫 啓辭가 기록되어 있는데, 臺諫 啓辭를 작성해서 왕에게 올릴 때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으며 그 내용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여 논문을 쓰기까지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臺諫 啓辭를 논문으로 쓰기 전에 우선 啓辭라는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를 밝혀야 했고, 啓辭라는 문서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草記라는 문서에 대해 먼저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草記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 다음으로 啓辭에 대한 논문을 썼으며, 마지막으로 臺諫 啓辭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臺諫 啓辭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草記와 啓辭에 대한 논문을 먼저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본업인 번역을 그만두고 4~5년 계획으로 조선시대의 제도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이며, 집필이 끝나면 조선시대 4대 법전의 번역을 새롭게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이전에도 법전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의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銀臺條例』 및 『銀臺條例』의 각 조항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사례들을 다수 뽑아서 편집한 『銀臺條例 參考資料集』을 연구소의 수강생들과 함께 번역하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政院故事』를 번역하였고, 내년 초에는 책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작한 ‘조선시

대 법령의 정보화사업에 연구소의 수강생들이 참여하게 되어 조선시대 법전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제가 이처럼 사료와 법전의 번역 및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면서 항상 아쉽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과 번역이나 정보화사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자와 실무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공부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생산해낸다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도 몇 년 전부터 『大明律直解』를 번역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연구자와 실무자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일 사료의 의미를 현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현장의 실무자들을 격려해주는 자리이자, 앞으로 연구자와 실무자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신진학술상(제19호)

수 상 자: 朴俊炯(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수상논문: 「재한일본 ‘거류지’·‘거류민’규칙의 계보와 「居留民團法」의 제정」  
(법사학연구 제50호[2014. 10])

### 선정이유:

조계와 관련된 법제를 세 개의 층위로 구분하여 그 최종단계인 「거류민단법」(1905; 법률 31)의 제정과정과 그 의미를 규명하여 위 법이 조선에서 거류지의 공간적 범주를 기획하는 과정을 밝혔다.

위 논문은 기존의 연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논문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외국인 거류지역을 역사의 전개에 따라 구분하여 관련 원사료를 바탕으로 일본외무성과 영사관의 교섭과정을 복원하고 법제의 제정배경과 내용 및 그 성격을 소개하였다. 나아가 조선 각지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을 규율하는 개별

거류지법령과 모든 일본인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령의 제정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하였다. 「거류민단법」의 제정·공포 이후 실제적인 입법은 시행규칙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조계의 의미를 한편으로는 확장하면서 동시에 그 경계의 소멸을 촉진하여 불법적 토지침탈과 거주를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연구자는 그 동안 주목을 받지 못한 재조선일본인의 거주공간을 법적으로 규율하면서 식민화의 역사적 궤적을 규명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신진상 후보로 선정하였다.

수상소감:

먼저 이렇게 신진학술상을 수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찍이 신진학술상을 수상하신 여러 훌륭한 선학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게 된 점 또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본래 한국의 개항기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주로 1876년의 강화도조약 체결 이래로 새롭게 설치된 외국인거류구역과 그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들과의 잡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치외법권적 장소인 외국인거류구역과, 또 외국인들이 치외법권을 향유했던 장소인 한반도의 현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서양의 오랜 법언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은 올바른 장소에 있어서만 타당하다.” 법은 보편적 정의의 실현을 말하지만, 법이 타당성을 지니는 장소는 보편적이지 못하다, 곧 법의 시행은 장소성과 연관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의 타당성이 장소에 의해 선택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 논문에서 소재로 삼은 것은 「거류민단법」인데요, 이 법은 일본의 법률이지만 대한제국의 땅에 시행구역이 설정되었고, 이때 시행구역의 설정 기준은 상당 수 일본인의 ‘거주’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이 비록 한국 영토라 할지라도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곳은 곧 일본의 법률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법은 스스로 타당성을 지니는 장소를 창출해 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방송된 ‘송곳’이라는 TV드라마에서는 프랑스의 한국지사에서 일

하고 있던 주인공이 노동상담소 소장에게 프랑스는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인데 왜 한국지사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상담소 소장의 대답은 여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되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노동자의 인권 보호라는 보편적 정의 실현에 있어서는 한국이 법의 시행을 위한 장소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말일 텐데요, 요즘 광장의 촛불을 보면서 그러한 법과 장소의 연관성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 시민의 힘, 그리고 시민의 역할을 새삼스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통해 그 가능성에 대한 답을 구하고, 또 그를 통해 신진학술상이 아니라 우수학술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기타

#### 1) 회원동정

- ① 제9회 한국법사학회 瀛山 法史學 學術賞 신진학술상 수상자인 朴俊炯 박사님이 2017년 1학기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로 부임 하였습니다.
- ② 우리 학회 부회장인 이재룡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 ③ 한복룡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4월 25일자로 ‘알버트넬슨 마르퀴즈 후즈후’ 평생공로상 수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 ④ 우리 학회 회장인 한상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중국감옥협회의 초청으로 4월 17일에서 21일까지 5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상해 제람교(提籃橋) 감옥 등을 참관하였습니다.
- ⑤ 우리 학회 김대홍 회원님이 2017년 3월부터 1년간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기초과정부 초빙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 2) 규정개정

- ① 간행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저자에 대하여 별쇄본 20부를 증정하던 것에서 PDF출판관행을 고려하여 10부를 증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6호부터 적용됩니다.
- ② 게재비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제, 투고 종류에 관계없이 게재비를 징수하였으나, 새로운 개정규칙에서는 논문에 대하여만 게재비를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30면 초과에 대하여 게재비를 징수하였으나, 면수를 확장하여 40면 초과에 대하여 징수하기로 하고, 추가게재료 납부 기준을 전임교원 및 실무가와 그 외의 자로 이원화하였습니다.

## 3) 법사학회 사이트 활용안내

한국법사학회 홈페이지는 <http://legalhistory.or.kr/>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한국법사학회의 각종 소식, 법사학과 관련된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동정이나 법사학과 관련된 소식들이 있으시면 lawhistory@naver.com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법제사 관련된 링크는 많이 확보되어 있으나, 서양법제사, 일본법제사, 중국법제사와 관련된 링크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제보로 링크를 확충해 나가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운영위원회

회장	한상돈(아주대)
명예회장	박병호(서울대 명예교수)
부회장	김창록(경북대), 정금식(서울대), 이재룡(충북대)
고문	서민(충남대 명예교수), 최종고(서울대 명예교수), 정종휴(전남대 명예교수, 바티칸 대사), 최병조(서울대), 심희기(연세대)
기획이사	이종길(동아대)
감사	정병호(서울시립대), 임상혁(숭실대)
총무이사	조지만(아주대), 김영석(아주대 법학연구소)
법제이사	김영희(연세대)
연구이사	서울오(이화여대), 문준영(부산대)
정보이사	성중모(서울시립대), 김대홍(울산과학대)
편집이사	박세민(경북대)
섭외이사	한승수(중앙대)
편집위원	김창록(편집위원장), 임대희(경북대), 이재룡(충북대), 이영록(조선대), 임상혁(숭실대), 성중모(서울시립대), 조지만(아주대), 문준영(부산대), 박세민(경북대), Marie Seong-Hak Kim(St. Cloud State Univ.), 안중철(Tübingen Uni.)

#### 5. 학회비

비정규직 연구자(대학원생 포함): 3만원

정규직: 5만원

기관: 7만원

입금계좌: SC제일은행: 632-20-242388 (한국법사학회)